대법원 2019도11015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시리아 국적의 피고인이 ① 페이스북에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고, ② A에게 IS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1)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심의 무죄판결 중 ①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② 테러단체 가입 권유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기각하였음(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전제사실

-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이하 'IS')는 국제연합(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 한 수니파 무장단체임
- IS는 그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조직원을 충당하는 것을 넘어 트 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적·지역과 상관없이 조직원으로 가입을 받고 있음
 - IS는 아으마끄 통신(Amaq Agency) 등 선전기관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영상과 사진들을 제작한 후 이를 조직원들을 통해 소셜미디어에 배포하고, 그것들을 보고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을 텔레그램 등과 같은 보안성이 뛰어난 모바일 메신저의 1:1 대화방에 유도한 다음,

¹⁾ 이하 '테러방지법'

그 대화방에서 IS 조직원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조직원으로 포 섭하고 있음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 피고인은 2015. 10. 25.경부터 2018. 6. 18.경까지 페이스북에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IS에 가입할수 있도록 선동함
- 테러단체 가입 권유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 피고인은 함께 일을 하던 A에게 IS 관련 동영상과 사진 및 피고인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IS에 대해 홍보하거나 협박 하는 등의 방법으로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함

다. 적용법조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u>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u> 징역에 처한다.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일부 유죄

-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 **유죄** ⇒ 징역 3년
- 테러단체 가입 권유 부분 **무죄**

나. 원심 ➡ 전부 무죄

- 피고인이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함
- 피고인이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에 대한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 테러단체 가입선동에서의 '가입'과 '선동'의 의미

나. 판결 결과 ➡ 파기환송(일부)

-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 **파기환송**
- 테러단체 가입 권유 부분 검사 상고 기각

다.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 관련 법리

1. 테러단체 가입 선통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표현의 자유

'테러단체 가입 선동'이란 피선동자의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선동은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테러 또는 테러단체와 관련한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만으로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이 될수 없음

테러단체와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만으로는 테러단체가입 선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표현물 등은 일정한 경우 테러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할 뿐임

2.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하는 표현의 판단기준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동의 특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게시된 표현의 경우 그것이 테러단체 가입 선동행위에 해

당하는지 아니면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동조하는 데에 그치는지의 구별은,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경위, 배경 및 상황,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표현방법 등에 더하여 관련 게시물의 수, 게시기 간, 불특정한 대상에 대한 노출 정도나 빈도와 아울러 '특정한 테러단체'의 인식가능성 및 그 테러단체의 인지도, 테러단체 구성원들의 인적관계와 행동 양태, 구성원들이 테러를 수행하는 방식과 발전과정, 구성원들의 모집방식, 그리고 선동자의 경력과 지위도 모두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사진이나 동영상 등 비언어적 표현의 경우 말이나 글로 이루어진 언어적 표현보다 더욱 함축적이고 다의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3. 테러단체 가입의 구체성과 위험성

테러단체 가입에 관한 내용이나 테러단체에 가입하라는 취지가 반드시 명시적·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또는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의사연락의 표지나 가입수단과 방법,절차 등이 제시되거나 제시된 표지 등이 실질적인 테러단체 가입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만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죄는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와 실행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 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 험성이 인정되어야만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선동행위가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진 다음에는, 선동에 따른 가입행위의 결의 여부와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수 있고, 테러단체 가입 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에게 가입의 결의가 발생할것을 요건으로 한다거나, 피선동자가 가입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가입 선동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라. 구체적 판단 판단 내용

■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 **➡ 파기환송**

-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음
-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 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하였어야 함
- 원심의 판단에는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테러단체 가입 권유 부분 **→ 상고기각**

●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